



본고는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들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 · 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한 닭, 오리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식품의 유형인 '양념육'의 원료로 가금육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선육을 절단하여 외식사업(양념육으로 만드는 곳)을 하는 곳으로 납품을 하는 사람인데.. 포장을 의무사항으로 지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신선육(닭)을 1차 가공(절단)하여 2차 가공(양념육)을 하는 곳으로 판매(납품)시 '양념육'의 원료와 같은 개념으로 유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소매단위의 포장된 닭을 구매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절단 후 적합한 비닐 등에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차 가공업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신일) 2011. 11. 25.

회신내용

- 귀하께서는 도축장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닭고기를 구입하여 절단한 후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려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판매하려는 제품은 닭고기 포장육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허기를 받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 · 응답집